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 조례안상정

(조례 7건)

거창군

#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5~66	거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5~7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005~7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005~75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5
2005~76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2005~77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80
2005~78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4

#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 - 66
----------	-----------

제출연월일	2005. 11. 1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단계별 개정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정 ('05. 6. 24시행, 도조례 폐지)이 완료되어, 폐지되는 도 조례와 현행 조례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됨

## ■ 주요내용

-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및 기간연장(안 제2조 내지 제4조)
- 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안 제5조)
- 다. 각종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안 제6조)
- 라. 각종 광고물등의 표시방법등(안 제7조 내지 제18조)
- 마.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안 제8조)
-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안 제19조, 제20조)
- 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및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시설기준 등 (안 제21조, 제27조)

## ■ 개정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04. 12. 23 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05. 6. 24 개정)
-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0조
- 행자부 및 경남도 표준개정안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세로 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

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  
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  
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  
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  
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  
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 광고물등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 내용  
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울타리·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광장 및 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군수는 영 제12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단, 광고면의 외부조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4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4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4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

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생활정보지 배부함
4.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40센티미터 이내(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크기)이어야 한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및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및 형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 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계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계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계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계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계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계시판 또는 지

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산림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 등 업무관련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거창군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규격이 6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단,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화면전체가 발광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 한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심의사항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광고물등의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①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등

②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누전테스트기와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등) ①군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표시기간 등) ①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계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8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의 게시판 또는 군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보관된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 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거창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영 제46조제6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0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li>○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li> </ul>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li> </ul>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 (대표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li> </ul>
기타교육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li> </ul>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2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군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4,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0,000	
			500	
			3,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향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2,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0,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군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2,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0개 이하	3,000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4,500
			· 5제곱미터 초과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		400,000
				10,000
		대		2,000
11. 선전탑		개		3,000
12. 아취광고물		개		3,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3,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개	· 10제곱미터 이하	5,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 벽 보		매	· 50매당	2,5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2,5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 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군
1. 시내·시외·전세버스외부 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 자동차 외부 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 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6. 축구조형물 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12,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홍보탑광고		개		15,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24,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3,000
			· 10개 초과시	2,000
			5개당 가산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사용자재·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li> <li>·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li> <li>·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p>21,000</p> <p>38,000</p> <p>1,300</p>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li> <li>·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li> <li>·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p>14,000</p> <p>20,000</p> <p>1,600</p>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6제곱미터 미만</li> <li>·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li> <li>·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p>14,000</p> <p>20,000</p> <p>800</p>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li> <li>·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li> <li>·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p>14,000</p> <p>20,000</p> <p>800</p>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의 옥상간판에 준함</li> <li>·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li> </ul>	
6. 현수막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li> <li>·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li> </ul>	<p>11,000</p> <p>600</p>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군지역
<p>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을 표시한 자</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p>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p>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 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p>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p>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p> <p>·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p> <p>·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p> <p>·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p> <p>·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p> <p>·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p>	<p>7만원 10만원 15만원</p> <p>20만원 25만원 35만원</p> <p>40만원 55만원 70만원 80만원 +10만원</p> <p>4만원 6만원 8만원</p> <p>10만원 15만원 25만원</p> <p>30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군지역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만원
- 3.0~3.7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0만원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만원
- 3.0~3.7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군지역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만원 14만원 16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3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3천원 장당20천원  장당10천원 장당18천원 장당22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8천원 장당10천원  장당10천원 장당18천원 장당22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0만원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0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2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40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60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80만원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0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0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4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50만원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0만원+
- 애드벌룬(공) 1개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당5만원
- 애드벌룬(공) 2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3개이상		50만원
		7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예보탑		30만원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60만원
나. 교통안내소		70만원+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	· 가로형간판에 준함	1㎡당5만원
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설물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li> <li>-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li> <li>-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li> <li>-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li> </ul>		20만원 25만원  30만원  31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당10만원
(1) 유인 비행선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당10만원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0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29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5만원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		45만원
- 3.0~4.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5만원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	
	액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비 고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⑱ 변 경 사 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b>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b>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 20 . . . . (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거    창    군    수    인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span></p>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p>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p> <table border="1"><tr><td style="text-align: center;"><p>사    진 (3.5×4.5)</p></td></tr></table> <p>거    창    균</p>	<p>사    진 (3.5×4.5)</p>
<p>사    진 (3.5×4.5)</p>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거    창    균    수    인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p>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p>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수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연번	② 교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 고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 육 계 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margin-right: 100px;">년</span> <span style="margin-right: 50px;">월</span> <span>일</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margin-right: 150px;">신청인</span> <span>인</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73
----------	---------

제출연월일	2005. 11. 24
제출자	거창군수

### ■ 개정이유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으로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조정

- 공무원정원 : 673명 → 677명  
(복식부기 업무도입 : 2명, 사업별예산제도 운영 :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59명 → 663명(증 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현행과 같음)

#### 나.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

다. 부칙에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 규정을 둠. (10. 20개정)

###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경남도 행정과-10570('05.9.30)
-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경남도 행정과-11215('05.10.17)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673명”을 “677명”으로, 동조제1호중 “659명”을 “663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6급3명, 7급3명, 8급2명)중 3명(6급1명, 7급1명, 8급1명)은 2006년 12월 31일, 3명(6급1명, 7급1명, 8급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명(6급1명, 7급1명)은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73명</u>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59명</u> 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77명</u> -- -----</p> <p>1. ----- : <u>663명</u> 2. (현행과 같음)</p>			

[별표]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3조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7 (673)	262 (258)	14	134	61	73	64	45	158
정 무 직		1	1							
일반직	소계	531 (527)	216 (212)	8	78	23	55	42	40	147
	4급	2	1	0	1	1	0	0	0	0
	4~5급	2	1	0	1	0	1	0	0	0
	5급	31	11	3	2	1	1	3	1	11
	6급	143 (142)	63 (62)	3	10	5	5	11	12	44
	7급	164 (163)	79 (78)	2	25	10	15	13	12	33
	8급	127 (126)	49 (48)	0	35	5	30	9	10	24
	9급	62 (61)	12 (11)	0	4	1	3	6	5	35
별정직	소계	17	1	0	16	0	16	0	0	0
	6급	1	1	0	0		0	0		
	6~7급	16	0	0	16		16	0		
연구사		4	1	0	2	2		1		
지도직	소계	32	0	0	32	32	0	0	0	0
	지도관	2	0	0	2	2				
	지도사	30	0	0	30	30				
기능직	소계	92	43	6	6	4	2	21	5	11
	6급	3	1	0	1	0	1	1	0	0
	7급	9	3	1	2	1	1	3	0	0
	8급	14	2	2	0	0	0	3	1	6
	9급	28	18	1	1	1	0	6	1	1
	10급	38	19	2	2	2	0	8	3	4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74
----------	---------

제출연월일	2005. 11.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개정이유

- 수수료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수수료를 감면하여 그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 행정자치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원가이하의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거창군수입증지조례』 제16조(증지의 소인), 제17조(증지의 무효) 및 제18조(증지의 환매) 규정에 따라“기납수수료의 반환”을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으로 변경함.(안 제6조)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 변경과 상위 법규정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신설 : 12종(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신설)  
-잡종재산의 대부신청,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차고지설치확인신청, 건설기계저등록(말소)신청,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소하천점사용기간 연장신청,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신고
- 폐지 : 6종(상위법의 수수료 법정화에 따라 삭제)  
-인감증명발급신청, 인감개인신고, 부재자사실확인, 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 실수요자사실확인, 관상수목자가생산사실확인
- 변경 : 5종(수수료 현실화)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1,000→2,000),세목별과세증명(500→1,000), 납세완납증명(500→1,000),개별공시지가확인(500→1,000),사도개설허가및축조변경허가신청(1,000→5,000)



##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128조
- 「거창군수입증지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 「인감증명법」 제12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지방세법」 제38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지적법」 제14조
- 「지방재정법」 제83조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9조
- 「사도법」 제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4조 및 2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제15820호(그2) 2004.10.15
-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56호 및 제80호
-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경상남도 세정과-3243(2005. 04. 19)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1호의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휴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9.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 【별표 1】 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사항란 · (1)인감증명 발급신청란 · (2)인감 개인신고란 및 제2호 신상에 관한 사항 (3)부재자 사실확인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중 (1)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란 · (2)실수요자 사실확인

(7)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	1통	2,000
-----------------	----	-------

란 및 (6)관상수목자가생산사실확인란을 각각 삭제하고, 제7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지방세에 관한 사항 (1)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및 (2)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의 요약란 “500”을 “1,000”으로 한다.

제7호 부동산에 관한 사항 (1)개별공시지가 확인의 요약란 “500”을 “1,000”으로 하고, (2)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란을 삭제하며, (2)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란 다음에 제3목 · 제4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잡종재산의 대부신청	1건	5,000
(4)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1건	1,300

제8호 축사에 관한사항 (3)“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내수면 어업허가 및 면허 신청”으로 한다.

제11호 건설 등에 관한사항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요율란 “1,000”을 “5,000”으로 하고,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란 다음에 제2목 내지 제7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차고지설치확인신청	1건	5,000
(3)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1건	1,000
(4)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1건	※참조
※요 액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5)소하천점사용기간 연장 신청	1건	1,300
(6)소하천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5,000
(7)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5,000

제15호 지역경제에 관한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 경제에 관한 사항		
(1)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2)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1건	20,000
(3)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20,000
(4)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신고	1건	2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기간 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생략)</p> <p>1. <u>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u> ……            ……            ……            ……            2 - 4. (생 략)            5 - 9. &lt;신 설&gt;</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5조의……………            ……            ……            2 - 4. (현행과 같음)            5.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u>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9. 「<u>장애인 복지법</u>」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 1】**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b>1. 인감에 관한 사항</b>							<u>&lt; 삭 제 &gt;</u>												
(1) 인감증명 발급신청		1통		500			<u>&lt; 삭 제 &gt;</u>												
(2) 인감 개인신고		1건		500			<u>&lt; 삭 제 &gt;</u>												
<b>2. 신상에 관한 사항</b>							<b>2. 신상에 관한 사항</b>												
(1) - (2) (생략)							(현행과 같음)												
(3) 부재자사실확인		1통		800			<u>&lt; 삭 제 &gt;</u>												
(4) - (7) (생략)							(현행과 같음)												
<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사항</b>							<b>3. 사실 및 실적에 관한사항</b>												
(1)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1통		1,000			<u>&lt; 삭 제 &gt;</u>												
(2) 실수요자 사실확인		1통		1,000			<u>&lt; 삭 제 &gt;</u>												
(3) - (5) (생략)							(현행과 같음)												
(6) 관상수목자가생산사실확인		1건		10,000			<u>&lt; 삭 제 &gt;</u>												
(7) 소유사실확인		1통		1,000			(7)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		1통		2,000								
(8) - (12) (생략)							(현행과 같음)												
<b>4. 지방세에 관한 사항</b>							<b>4. 지방세에 관한 사항</b>												
(1)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500			(1) .....		.....		1,000								
(2)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 증명		1통		500			(2) .....		.....		1,000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현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b>7. 부동산에 관한 사항</b>				<b>7. 부동산에 관한 사항</b>				<b>7. 부동산에 관한 사항</b>				<b>7. 부동산에 관한 사항</b>			
(1) 개별공시지가 확인		1필지			500		(1) .....		.....			1,000			
※ 비고: 동일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				.....											
(2) 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 병기발급		1필지			300		<삭제>								
※ 비고 : 동일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															
<신설>							(3) 잡종재산의 대부신청		1건			5,000			
<신설>							(4)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1건			1,300			
<b>8. 측사에 관한 사항</b>				<b>8. 측사에 관한 사항</b>				<b>8. 측사에 관한 사항</b>				<b>8. 측사에 관한 사항</b>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1건			10,000		(3) 내수면 어업허가 및 면허 신청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b>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b>				<b>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b>				<b>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b>				<b>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b>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1건			1,000		(1) .....		.....			5,000			
<신설>							(2)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건			5,000			
<신설>							(3)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1건			1,000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신설〉				(4)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신청	1건	※참조	
				※ 요 액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신설〉				(5) 소하천점사용기간 연장 신청	1건	1,300	
〈신설〉				(6) 소하천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5,000	
〈신설〉				(7)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5,000	
〈신설〉				<b>15. 지역 경제에 관한 사항</b>			
〈신설〉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	
〈신설〉				(2)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1건	20,000	
〈신설〉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20,000	
〈신설〉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20,000	



#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5~75
----------	---------

제출연월일	2005. 11. 24.
제출자	거창군수

## ■ 제정이유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235호 2004.10.22)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 산업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시설물, 상인회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의무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화장실 등의 관련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설물의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 ■ 제정근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40조, 제41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업으로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그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시설물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군수
  - 나. 군수로부터 보조금 이전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상인회 대표자
  - 다.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군수가 보조금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민법」·「상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조합(이하 “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업을 위탁한 번영회 대표자

제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및 토지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한 시장으로서 사업시행 당시 당해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종전법(2005.3.1일 이전까지를 말한다)에 의하여 무등록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

②시장법인 소유로 할 수 있는 토지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소유의 시장구역 또는 건축물 안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

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도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몰, 교육시설. 다만, 개별점포 안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2. 법인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밖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교육 및 행사공간 등

3. 제2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법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등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자 신고) 상인회 및 시장법인과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당해 재산의 내용 연수보다 10년 이상 경과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변상의 책임 등) ①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거창군 주차장 조례」 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전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존 상인조직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 76
----------	----------

제출연월일	2005. 11. 24.
제출자	거창군수

## ■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235호 2003.7.30)됨에 따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개설 기간, 운영 관리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경상남도의 시군 감사 시정조치사항에 따른 미터법 적용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공설시장, 상설시장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임시시장 개설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 임시시장 개설취소 및 개설기간을 정함(안 제5,6조)
-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8,9조)
- 공설시장의 사용료 납기,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13조)
- 공설시장의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15,18조)
- 원상회복과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21조)

## ■ 개정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와 동법 시행령

#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라 함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2장 임시시장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 임시시장의 개설기준은 대지면적 300㎡ 이상
2. 옥내 임시시장의 개설기준은 바닥면적 150㎡ 이상

③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개설신청 및 지정)** ①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제5조(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경우
3. 제3조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로 하며, 군정시책상 개설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장 공설시장 사용

**제7조(공설시장의 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과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변경시(설비포함)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 함으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설시장의 상설점포 사용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8조(사용권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제9조(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



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시장 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을 오손하였을 때
4. 기타 질서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 제4장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사용일수가 16일이상일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액 전액을, 15일이하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③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납기)**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하되 개장일에 군수가 지정하는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금지)**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시장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장관리인)** ①시장의 관리인은 시장소재 읍·면장으로 하며, 시장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사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관리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

②읍·면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번영회나 시장관리와 관련 있는 자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5장 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수탁자의 선정은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결정하되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금액을 낙찰자로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장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계약보증금)** ①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금고에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거창군 내의 주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제18조(계약금액 납부)** ①수탁자는 매월 사용료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20조(원상회복)** 시장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제21조(변상금)** 공설시장을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정취소
2. 제9조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
3. 제19조에 의한 위탁계약해제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

1. 시장명 :

2. 소재지 :

3. 개설자

- 법인명 :

- 대표자 :

- 주소 :

(☎ )

4. 영업장 규모

- 개설면적 :

- 매장면적 :

5. 개설기간 :

6. 판매상품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별표 1]

시장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상 설 장	점 포			
	노 점	1㎡당/일	90	
	화물자동차	대당/일	180	
정 기 장	장 옥	1등지	1㎡당/일	90
		2등지	1㎡당/일	70
		3등지	1㎡당/일	60
	노 점	1㎡당/일	60	
	화물자동차	대당/일	150	
임 시 장	장 옥	1등지	1㎡당/일	60
		2등지	1㎡당/일	50
		3등지	1㎡당/일	40
	노 점	1㎡당/일	40	
	화물자동차	대당/일	120	

1등지(2면이상 도로 접합장소), 2등지(1면이상 도로 접한 장소), 3등지 (그외)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5~77
----------	---------

제출연월일	2005. 11. .
제출자	거창군수

<p>■ 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격감되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li> <li>○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모성보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li> </ul>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장려금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원</li> <li>-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li> <li>- 임부 철분제 및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li> </ul> </li> <li>○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부 또는 모)가 거창군에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는 경우</li> <li>-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부철분제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li> </ul> </li> <li>○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li> <li>○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읍,면)→지원 대상자 확인후 군 제출→ 지원 여부 결정후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군)</li> </ul> </li> </ul>
<p>■ 제정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li> </ul>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구가 격감되어 거창군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장려금”이라 함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출생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원
2.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3. 임부 철분제 및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둘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부철분제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읍·면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자료, 기타 행정자료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일이내에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①임산부 (출생아) 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배우자 (보호자)성명	
④주소 (전화번호)					
⑤분만기관명			⑥분만일자		

⑦출산장려금 지급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주소

애기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확인

200 년 월 일

거창군수(보건소장)귀하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05~78
----------	---------

제출연월일	2005. 11.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제정이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 안 제1조 )
  - 목적 :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
- 열람·이용시간 및 휴관일 (안 제4조, 제5조)
  - 자료실 : 09:00 ~ 18:00, 자유열람실 : 09:00 ~ 23:00
  - 휴관일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 자료대출,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도서회수 불능처리, 기증자료 등 자료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9조 )
- 부속시설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부속시설 사용료:시청각실 50,000원, 다목적실 30,000원
  - 프린터 및 자료복사 수수료:복사-A4:40원, B4:50원, 프린터A4:50원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6조)

## ■ 제정근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21조 및 제22조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도서관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4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 및 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부속시설”라 함은 도서관 내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을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창군 교육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료실 : 09:00 ~ 18:00 (단, 토·일요일은 09:00 ~ 17:00)
2. 자유열람실 : 09:00 ~ 23:00

제5조(휴관일) ①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2. 매주 월요일

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대출)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거창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거창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 이면서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자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6. 기타 소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회수 불능처리)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준거하여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기증자료) 소장은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이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도서관의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 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제11조(사용시간) 소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시설 사용 및 도서관 자료복사·자료출력의 경우 【별표】와 같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그 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소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4조(사용자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관의 제한) 소장은 정신이상자, 전염병환자, 음주자, 기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소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시청각실	1회 3시간	50,000원	· 냉·난방시설 사용료(별도) - 1회(3시간기준) 20,000원,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다목적실	“	30,000원	· 냉난방시설 사용료(별도) - 1회(3시간기준) 15,000원, 초과시 시간당 4,000원 가산

※ 사용료는 기준시간을 적용하며, 초과 시 시청각실은 매1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10,000원, 다목적실은 5,000원을 가산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프린터 및 자료복사 수수료

구 분	규 격	기 준	금액 (원)	비 고
복 사 기	A4	1매(단면)	40(단면)	
	B4	1매(단면)	50(단면)	
컴퓨터 프린터기	A4	1매(단면)	50(단면)	